

# 검토보고서

2024. 2. 27.(화)

검토안건	발의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아동보육과)
- 제출일 : 2024. 2. 16.
- 회부일 : 2024. 2. 20. (의안번호 : 24-4)

## 2. 제출이유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제22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 2) 추진 필요성

- 기존 위탁 운영 및 신규 설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시설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 보장(최초운영권 5년, 서울시 지침)

##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 라. 위탁시설 개요

### ○ 소재지 및 규모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비고
			면적 (㎡)	정원 (명)	
1	성산누리	월드컵로 215, 1층 (성산동, 성산종합사회복지관)	343	85	
2	마포자이더 더 센트리지	송문길 98, 관리동 1층 (염리동, 마포자이더 센트리지)	367	65	
3	마포한강 아이파크	희우정로 77, 102동 1층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	111	21	
4	오즈	마포대로 195, 4단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18	53	
5	토리	마포대로 195, 3단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9	45	
6	숲속	마포대로 195, 1단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8	62	
7	해가람	마포대로26길 19 (아현동)	429	68	
8	삼성푸른숲	마포대로11길 50, 409동 1층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218	36	
9	도화	새창로4다길 18 (도화동)	295	65	
10	망원	동교로 47-9 (망원동)	327	57	
11	합정	양화진길 43 (합정동)	318	45	
12	용강	토정로37가길 34 (용강동)	429	81	
13	(가칭)공덕동 크로시티행복주택	백범로31길 19, 1층 (공덕동, 공덕 크로시티)	270	45	신규확충 (신설)
14	온누리	송문길 106, 관리동 1층 (염리동, 상록아파트)	205	37	신규확충 (전환)

○ 위치도

<p>1 성산누리어린이집</p>	<p>2 마포자이 더 센트리어린이집</p>
	
<p>3 마포한강아이파크어린이집</p>	<p>4 오즈어린이집</p>
	
<p>5 토리어린이집</p>	<p>6 숲속어린이집</p>
	
<p>7 해가람어린이집</p>	<p>8 삼성푸른숲어린이집</p>
	

9	도화어린이집	10	망원어린이집
---	--------	----	--------



11	합정어린이집	12	용강어린이집
----	--------	----	--------



13	(가칭)공덕동크로시티행복주택어린이집	14	온누리어린이집
----	---------------------	----	---------



## 마. 민간위탁기간

연번	어린이집명	위탁기간	기존 수탁자
1	성산누리	2024. 07. 27. ~ 2029. 07. 26.	학교법인 이화학당
2	마포자이더 센트리지	2024. 09. 26. ~ 2029. 09. 25.	유미선 (개인)
3	마포한강 아이파크	2024. 09. 26. ~ 2029. 09. 25.	심지은 (개인)
4	오즈	2024. 10. 01. ~ 2029. 09. 30.	민광미 (개인)
5	토리	2024. 10. 01. ~ 2029. 09. 30.	노재민 (개인)
6	숲속	2024. 10. 01. ~ 2029. 09. 30.	양미순 (개인)
7	해가람	2024. 10. 01. ~ 2029. 09. 30.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8	삼성푸른숲	2024. 10. 01. ~ 2029. 09. 30.	김명선 (개인)
9	도화	2025. 01. 01. ~ 2029. 12. 31.	홍인혜 (개인)
10	망원	2025. 01. 01. ~ 2029. 12. 31.	강서 대학교
11	합정	2025. 01. 01. ~ 2029. 12. 31.	재단법인 한강중앙교회
12	용강	2025. 01. 01. ~ 2029. 12. 31.	재단법인 동막교회
13	(가칭)공덕동 크로시티행복주택	개원일로부터 5년	
14	온누리	전환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4,165,307	829,944	2,319,527	1,015,836
1	성산누리	449,926	94,235	244,604	111,087
2	마포자이더 더 센트리지	243,740	13,097	163,395	67,248
3	마포한강 아이파크	141,876	4,263	98,367	39,246
4	오즈	371,024	92,065	184,387	94,572
5	토리	253,952	8,987	171,746	73,219
6	숲속	334,496	82,587	169,442	82,467
7	해가람	409,390	97,067	212,111	100,212
8	삼성푸른숲	181,813	4,211	129,056	48,546
9	도화	446,197	100,031	235,762	110,404
10	망원	399,175	101,056	198,175	99,944
11	합정	253,803	62,655	126,891	64,257
12	용강	319,915	72,190	171,091	76,634
13	(가칭)공덕동 크로시티행복주택	160,000	55,000	81,000	24,000
14	온누리	200,000	42,500	133,500	24,000

## 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 번	어린이집명	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국비	시비	구비	소계	국비	시비	구비
1	성산누리	449,926	395,727	93,919	203,524	98,284	54,199	315	41,082	12,802
2	마포자이더 더 센트리지	243,740	223,776	12,806	152,214	58,756	19,964	291	11,181	8,492
3	마포한강 아이파크	141,876	134,690	3,984	95,863	34,843	7,186	279	2,504	4,403
4	오즈	371,024	350,958	91,774	173,130	86,054	20,066	291	11,258	8,517
5	토리	253,952	241,955	8,708	167,807	65,440	11,997	279	3,938	7,780
6	숲속	334,496	311,805	82,297	155,309	74,199	22,691	291	14,133	8,267
7	해가람	409,390	376,330	96,764	189,319	90,247	33,060	303	22,791	9,966
8	삼성푸른숲	181,813	172,879	3,931	126,058	42,890	8,934	279	2,999	5,656
9	도화	446,197	404,153	99,728	205,932	98,483	42,044	303	29,830	11,911
10	망원	399,175	379,797	100,765	185,320	90,712	22,378	291	12,855	9,232
11	합정	253,803	240,812	62,375	119,667	58,770	12,991	279	7,224	5,488
12	용강	319,915	284,056	71,887	144,943	67,226	35,859	303	26,149	9,407

연 번	어린이집명	계	국비	시비	구비	산출근거
13	(가칭)공덕동크로시티 행복주택	160,000	55,000	81,000	24,000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14	은누리	200,000	42,500	133,500	24,000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주민 공동시설 개선비

## 자. 민간위탁 추진일정(안) [신규확충 어린이집]

- 1) 2024. 3.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고
- 2) 2024. 4.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3) 2024. 4. ~ 5.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4) 2024. 4. ~ 6. :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매 등 개원 준비
- 5) 2024. 6. : 구립어린이집 개원

## 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2) 신규 설치 및 기존 위탁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4. 검토의견

### 1) 제안경위

- 본 동의안은 2024. 2. 1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 2. 2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기준 마포구 전체 어린이집 208개소 중 구립어린이집 <표 1>은 70개소로 전체 대비 약 48%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1> 구립 어린이집 연도별 현황181

(2024. 2월 기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구립어린이집 수 (증가 수)	76	81 (5)	85 (4)	85 (-)	87 (2)	최근 5년간 11개소 증가

\* 2024년 개원예정: 2개소[(가칭)공덕동크로시티행복주택어린이집, 온누리어린이집]

## 2) 적정성 검토

- 관계법령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 신규 설치 및 기존 위탁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 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아동보육과	김은숙 (8980)	안춘희 (8901)

## 참고 자료

### 1.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1조(수탁자 모집)

-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2조(위탁기간)

-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매입하는 임대 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2023.3.9.>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 현황**

연번	구분	성명	현직	비고
1	관계 공무원	한정우	마포구 복지동행국장	당연직
2		우미영	마포구 건강동행과장	당연직
3		송상아	마포구 교육정책과장	당연직
4	보호자 대표	이준희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위촉직
5		김은성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	위촉직
6		박은완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위촉직
7		유병석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	위촉직
8	공익 대표	조흥연	노무법인 시대 대표	위촉직
9		조송미	마포구 약사회 부회장	위촉직
10		이정우	한국입법기자협회 회장	위촉직
11		전미선	한국근우회 사무국장	위촉직
12		장병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	위촉직
13	보육 전문가	김지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위촉직
14		장혜진	한국보육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	위촉직
15		이미애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촉직
16		최지혜	을지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위촉직
17	어린이집 원장	박영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위촉직
18		김미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위촉직
19	보육교사 대표	조영희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위촉직
20		이은정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위촉직

\*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2023. 5. 1. ~ 2025. 4. 30.)